※ 신·구조문대비표 (별표 개정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없음)

1 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대여승인)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대출신청서([별지 제4호, 제5-1호 서식])를 자료출납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대여승인) ① ----------([별지 제5호, 제5-1호])----------
15조(자료의 기탁) ② (기탁보관증서의 교부) 제1항에 의거 자료를 수탁할 경우에는 기탁신청서([별지 제7-1호])와 소장내력서[별지 제18호]를 받고 [별지 7호 서식]에 의거 수탁증서원부를 작성해야 하고, 기탁보관증서([별지 제8호])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. <개정 2019. 9. 18.>	15조(자료의 기탁) ② ----------[별지 7호] 서식에 의거 수탁원부----------기탁자료 보관증서([별지 제8호])----------
제16조(기탁자료의 반환) ③ 기탁자가 자료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기탁증서를 회수하고. 기탁자료 반환확인서([별지 서식 제10-1호])를 받아 자료기탁 원부에 기록한다.	제16조(기탁자료의 반환) ③ ----기탁자료 보관증서--------([별지 제10-1호])---------- 기탁자료 수탁원부----------
제17조(자료의 기증) ② 제1항에 의거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에는 [별지 제11호 서식]에 의거 수증자료원부를 작성해야하며, [별지 제12호 서식]의 기증자료 수납증서를	제17조(기탁자료의 반환) ② ----------수증증서원부([별지 제11호])---------- 기증자료 수납증서([별지 제12호])----------

기증자에게 교부한다.	----------
제23조(자료의 열람) ② (열람신청)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열람(복제) 신청서([별지 제15호 서식])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23조(자료의 열람) ② ---------- ---([별지 제15호])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2 복무규정 일부개정(안)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시간외 근무) 1(생 략) ② 시간외근무자는 사무국장에게 근무 사실을 신고하고, 시간외 근무 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 근무 중 보안, 화재예방, 도난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18조(시간외 근무) 1(생 략) ② 시간외근무자는 사무국장에게 근무 사실을 신고하고, 시간외 근무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3 여비규정 일부개정(안)

※ 별표 개정 조문 대비표 생략

4 인사규정 일부개정(안)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제21조(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) ① ~ ② (생 략) ③ 개방형직위에 외부인을 임용하는 경우 연봉제적용을 받는 직원은 직원연봉규정 **제8조제5항**을 적용하여 연봉을 결정한다. 제41조(승진 소요 연수) ② 제1항의 승진 소요기간에는 직위해제, 휴직,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의 각호의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. 1~3 (생 략)	제21조(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) ① ~ ② (생 략) ③ 개방형직위에 외부인을 임용하는 경우 연봉제적용을 받는 직원은 직원연봉규정 **제7조제5항**을 적용하여 연봉을 결정한다. 제41조(승진 소요 연수) ② 제1항의 승진 소요기간에는 직위해제, 휴직,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의 각호의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. 1~3 (생 략) 4. 제5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

5 비정규직 인사규정 일부개정(안)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신규고용) ① ~ ⑤ (생 략) ⑥ 신규고용인력의 고용일자는 매월 1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	제11조(신규고용) ① ~ ⑤ (생 략) ⑥ 신규고용인력의 고용일자는 매월 1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.

※ 별표

여비규정 별표 1. 직원과 공무원 대조표

지 급 대 상	여 비 지 급 액	구 분	비 고
임원, 원장	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의 지급액		
1급	일반직 3급 공무원의 지급액		
2급	일반직 4급 공무원의 지급액		
3~4급	일반직 5~6급 공무원의 지급액		
5급이하 및 기능직	일반직 7급이하 공무원의 지급액		

6 정보통신 보완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(안)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인터넷 등 상용망 연동) 1~5(생 략)	제7조(인터넷 등 상용망 연동) 1~5(생 략) 6. 재택근무 등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외부에서 접속이 필요할 때 보안담당관 승인 때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.